

2018년 고용·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

- 대상: ①건설업·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(‘12.1.21. 이전 가입자)
- 신고·납부대상 보험료: 201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8년도 개산보험료
- 신고·납부기한: 2018년 4월 2일(월)
- 보험료 신고방법: 보험료 산정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

- 전자신고 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<http://total.kcomwel.or.kr>)를 통해 신고
- 방문,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(지역본부, 지사)에 제출

● 보험료 산정방법

- 2017년도 확정보험료 = 2017년도 보수총액 × 보험료율

< 2017년도 보수총액 산정방법 >

- 건설 본사: 2017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(지급결정된 미지급보수 포함)
- 건설 현장: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+ (외주공사비 × 30%)

구분	산재보험	고용보험
본사 보수총액	사무(내근)직원 보수	사무(내근)직원 보수 +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
건설일괄 보수총액	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+ 현장일용직 보수 + 외주공사비×30%	현장일용직 보수 + 외주공사비×30%

- 2018년도 개산보험료 = 2018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× 보험료율

< 2018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>

- 건설 본사: 2018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
- 건설 현장: 총공사금액 × 27%

* 2018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17년도 보수총액의 $\frac{70}{100}$ 이상 $\frac{130}{100}$ 이하인 경우에는,
2017년도 보수총액을 2018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

● 보험료 납부방법

- 일시납부 원칙. 다만,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% 공제
-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거나 보험료신고 후 공단에서 납부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, 우체국에 납부(현금)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료 신고·납부 안내책자를 참고